

2026/27

항공종사자, 항공교통안전관리자

항공안전법

엠북 교통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★ PDF 전자책

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
★ 최근 법령 신설, 개정 내용 반영

★ 2시간 55분 완성

도서명 : 항공안전법

ISBN : 979-11-7393-284-7

발간일 : 2026-07-03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4,500원



항공안전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항공기 등록(p15)

제3장 항공기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(p19)

제4장 항공종사자 등(p31)

제5장 항공기의 운항(p51)

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(p69)

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(p77)

제8장 외국항공기(p87)

제9장 경량항공기(p90)

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(p98)

제11장 보칙(p108)

제12장 벌칙(p117~127)

[용어]

이륙은 이수 포함

착륙은 착수 포함

주류등은 주류, 마약류, 환각물질 등

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

[약어]

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
부령은 국토교통부령

한국은 대한민국

고의/중과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
외국인사업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

이착륙은 이륙, 착륙

협약은 국제민간항공협약

영어증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

영어증명서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

의무보고는 (항공안전)의무보고

자율보고는 (항공안전)자율보고

주류등 영향하는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
상태에서

안전시스템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

통합안전시스템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

시스템등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(안전시스템, 통합안전시스템)

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

[비고]

-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- 검은색은 법
- 보라색은 시행령
- 갈색은 시행규칙
- 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- 붉은색은 시행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1. 목적

- 협약/부속서 표준과 권고에 따라
- 항공기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항행 방법과
- 국가, 항공사업자,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 규정

2. 정의

1) 항공기

- 비행기, 헬리콥터, 비행선, 활공기
- 부령기준 초과 자이로플레인, 동력패러슈트, 무인비행장치
- 지구 대기권 내외 비행 항공우주선

(비고)

- 항공기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/장치
- 공기의 반작용은 지표면/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

(부령 기준)

1) 비행기/헬리콥터는 발동기 1개 이상

a) 사람 탑승시

- 최대이륙중량이 600, 수상비행시 650kg 초과 및
- 조종사 좌석 포함 탑승좌석 수 1개 이상

b) 미탑승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초과

2) 비행선은 발동기 1개 이상

- 사람 탑승시 조종사 좌석 포함 탑승좌석 수 1개 이상

- 미탑승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80kg 초과 또는 길이 20m 초과
- 3) 활공기는 자체중량 70kg 초과

2) **경량항공기**

- 다음 **모두** 충족하는 비행기, 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, 동력패러슈트 등
- 최대이륙중량 600, 수상비행시 650kg 이하
- 최대 실속속도나 최소 정상비행속도 45노트 이하
- 조종사 좌석 포함 탑승 좌석 2개 이하
- 단발 왕복발동기나 전기모터 장착
- 조종석은 여압 되지 않을 것
- 비행 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
- 고정된 착륙장치 있을 것

3) **초경량비행장치**

가) 동력비행장치는 동력 이용 및 다음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

- a) 탑승자, 연료, 비상용 장비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15kg 이하
 - 배터리 중량은 포함
- b) 연료 탑재량 19리터 이하
 -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 이용시는 적용안함
- c) 좌석 1개

나)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탑승자와 비상용 장비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70 kg 이하

- 행글라이더는 체중이동, 타면조종 등으로 조종
- 패러글라이더는 날개에 부착된 줄로 조종

다) 기구류는 기체의 성질/온도차 등 이용

- 유인자유기구
- 무인자유기구(기구 외부에 2kg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)
- 계류식기구

라) 무인비행장치

-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, 무인수직이착륙기
- 무인비행선은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80kg 이하이고 길이 20m 이하

마) 회전익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요건 갖춘 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

바) 동력패러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 얻는 장치를 부착한,

- 착륙장치 없는 비행장치나, 착륙장치가 있고 동력비행장치 요건 갖춘 비행장치

사) 낙하산류는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, 물체 속도를 느리게 함

아) 장관 고시 비행장치

4) **국가기관등항공기**

- 국가, 지자체, **국립공원공단**이 소유/임차 및 다음 업무 수행(단, **군용**, **경찰용**, **세관용** 제외)
- 재난/재해 등 수색/구조
- 산불 진화/예방
- 응급환자 후송 등 구조/구급활동
- 공공 안녕/질서유지

5) **항공업무**

가) 항공기 운항 업무

- 무선설비 조작 포함, 항공기 조종연습 제외

나) 항공교통관제

- 무선설비 조작 포함, 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

다) 항공기 운항관리

라) 정비등(정비/수리/개조)된 항공기등(항공기, 발동기, 프로펠러), 장비품, 부품에 대해 감항성(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) 확인, 경량항공기, 장비품/부품 정비사항 확인

6) 항공교통관제 업무(25년 11월 시행)

- 항공기(경량항공기 포함)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, 항공교통 질서 유지/촉진을 위해 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, 다음 업무
- 단, 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

가)

- 비행장관제업무는 비행장, 공항 기동지역(유도로/활주로), 주위 공역을 운항하는,
- 접근관제업무는 비행장/공항 출발/도착하는,
- 지역관제업무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 관제구를 비행하는,
- 항공기 이동 관찰,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 지시, 안내, 정보 전달

나) 상기 업무 보조

- a) 비행장관제업무 보조
 - 허가중계, 비행자료관리
- b) 접근/지역 관제업무 보조
 - 비행자료관리

7) 항공기사고

- 비행 목적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자가 내릴 때까지(무인항공기는 비행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)

-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,
- 가) 사망, 중상, 행방불명
 - 나) 항공기 파손, 구조적 손상
 - 다) 위치 확인, 접근 불가

8)

- **경량항공기사고**는 비행 목적으로 경량항공기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,
- **초경량비행장치사고**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,
- 가) 사망, 중상, 행방불명
- 나) 추락, 충돌, 화재 발생
- 다) 위치 확인, 접근 불가

9) 항공기준사고

-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

10) 항공안전장애

- 항공기사고/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것

1) 항공안전위해요인

- 항공기사고/준사고, 항공안전장애 발생, 발생 가능성 확대할 수 있는 상황, 상태, 물적/인적요인

2) 위험도

-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 저해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심각도

3) 항공안전데이터

-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, 결함, 기능장애 보고
- 비행자료, 분석결과
- 레이더 자료, 분석결과
- 항공안전 의무/자율 보고된 자료
- 사고 등 조사결과
-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, 결과보고
- 기상업무 정보
-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/관리하는 자료
- 항공사업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
- 항공협회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/통계
- 국제기구, 외국정부 등이 한국과 공유한 자료
- 위험물 포장, 적재, 저장, 운송,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상 위험 야기 우려 있는 사건
- 항공기/조류 충돌
- 장관 고시 자료

4) 항공안전정보

-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, 정리, 분석한 것

5) 비행정보구역

- 항공기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비행과 수색, 구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, 협약/부속서에 따라 장관이 명칭, 수직/수평 범위를 지정/공고한 구역

6) 영공

- 한국 영토, 내수 및 영해의 상공

7) 항공로

- 장관이 항공기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에 표시한 공간의 길

8) 항공종사자

-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받은 자

9) 모의비행훈련장치

- 항공기 조종실을 같거나 유사하게 모방한 모의비행장치, 비행훈련장치, 기본비행훈련장치

20) 운항승무원

- 자격증명 받은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업무에 종사

1) 객실승무원

-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 탈출 등 승객 안전 업무 수행

2) 계기비행

- 항공기 자세/고도/위치, 비행방향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

3) 계기비행방식

- 계기비행 하는 자가 장관이나 항공교통업무증명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, 이착륙 순서, 시기, 비행 방법에 따라 비행

4) 피로위험관리시스템

-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하도록 피로 관련 위험요소를 경험, 과학적 원리, 지식에 기초해 지속적 감독/관리

5) 항공교통관리

- 항공교통/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,
- 공역 등 지정 등 업무, 항공교통업무,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

6) 항공교통데이터

- 외국정부,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/교환하는 자료
- 공역관리를 위해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/관리하는 자료
- 레이더 자료, 분석결과
-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작성/제출해야 하는 비행계획, 관련 자료
-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자료
- 항공정보, 항공지도 제공에 필요한 자료
- 공항시설 중 항공기 이착륙 관련 시설로서,
- 활주로, **항행안전, 통신, 기상관측, 장관 고시 시설**에서 생성/사용되는 자료
-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/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 자료
-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,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해 생산하는 자료
- 운항시각
- 항공기상예보, 항공기상특보 등 항공기상자료

7) 관제권

- 비행장, 공항, 주변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장관이 지정/공고한 공역

8) 관제구

-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200m 이상 높이의,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장관이 지정/공고한 공역

9) 항공교통관제시설

- a) 비행장관제탑: 인천, 김포, 제주, 여수, 양양, 무안, 울산, 울진, 정석, 태안 관제탑
- b) 접근관제시설: 서울/제주/김해 접근관제소, 울진울산 접근관제실, 여수 도착관제실
- c) 지역관제시설: 대구/인천 지역관제소

3.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

- 가) 군용 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 종사자에 법 적용안함
- 나) 세관/경찰업무용 항공기, 미국 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 종사자에 법 적용안함
 - 단,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은 적용
 - 무선설비 설치/운용
 - 항공기 비행규칙
 - 무인항공기 비행 금지
 - 항공기 비행제한
 - 항공기 이동, 이착륙, 비행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 준수

4.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

- 가)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자에 다음을 제외한 법 적용
 - 항공기 이착륙 장소
 - 긴급항공기 지정
 - 위험물 운송, 포장/용기 검사, 취급 교육
 - 전자기기 사용제한

- 항공안전 활동

나)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/재난 등 수색/구조, 화재 진화, 응급환자 후송, 소방, 산림,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해 재해/재난 예방, 응급환자 장기 이송, 산림 방제/순찰,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및 유사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(훈련 포함)시 다음 적용안함

- 항공기 연료
- 항공기 비행규칙
-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, 물건 투하/살포, 낙하산 강하 금지
- 항공기 운항 포함 운항기술기준 고시
- 항공기 비행제한
- 항공기 이동, 이착륙, 비행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 준수

다) 항공안전 의무/자율 보고, 기장의 보고를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시 장관은 소관 행정기관 장으로 봄

- 소관 행정기관 장은 장관에 보고받은 사실 통지

5.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해 운영하거나 한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해 운영시

- **임대차 항공기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**은 협약에 따라 장관이 정해 고시

6. 장관의 국가 **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**

가) 5년마다 수립 요

나) 내용

- a) 항공안전정책 목표/전략
- b) 항공기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
 - 사고 예방, 운항 안전
 - 제작/정비, 안전성 인증체계
- c) 비행정보구역/항공로 관리, 항공교통체계 개선
- d) 항공종사자 양성, 자격관리
- e) 항공안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- 다) 수립/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장에 협조 요청 가능
- 수립/변경한 때 관보에 고시, 협조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장에 알림

- 라)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

7.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 제고, 항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

매년 12월 29일을 **항공안전의 날**로 정함

- 국가/지자체는 행사 등 사업 가능

(신설, 25년 8월 시행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항공기 등록

7~18조

1. 항공기 등록